

# 글로벌 블루카본 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2021.1.7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지원을 받는 글로벌 블루카본 인재양성 교육연구팀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4단계 BK21사업 지원을 받는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내 교육연구팀의 명칭은 글로벌 블루카본 인재양성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이라 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교육연구팀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비 수혜대상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등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 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 제2장 교육연구팀의 구성

**제5조(교육연구팀의 장)**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선정된 교육연구팀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구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교육연구팀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팀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팀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팀의 장은 본 지침 제7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교육연구팀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팀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교육연구팀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팀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팀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팀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 명이 교육연구팀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⑧ 교육연구팀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선정 전 기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해, 사업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의 장을 겸할 수 있다.

**제6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연구소 등 소속으로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 되어 있지 않은 교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는 해당 학과(융합전공 포함)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팀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 사유)**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팀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팀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팀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총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하며 4단계 BK21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실험실(연구실) 또는 해양학과에서 재실하여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교육연구팀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팀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팀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제9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팀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제8조에 의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교육연구팀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 과정생

**제10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석사 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 이내의 석·박사통합 과정생 : 월 7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2년 이내의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 이상 그리고 4년 이내의 석·박사통합 과정생 : 월 130만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 이내의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 월 100만원 이상

③ 교육연구팀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교육연구팀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16조에 명기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팀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연구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 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 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 다.)를 할 수 있다.

③ 계약교수(연구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연구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연구교수)는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교육,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연구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연구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연구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연구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종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종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 ⑥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연구팀 자체 평가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 달성을 하지 않는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행정전담인력)**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교육연구팀내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행정전담 인력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되 상세 업무 분장은 교육연구팀장의 지시에 따른다.
- ③ 행정전담 인력의 급여는 인건비 예산 내에서 지급하며, 기타 사항은 인천대학교의 제 규정에 준용한다.

**제13조(해외학자)**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교육연구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외학자(방문교수/방문연구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② 해외학자(방문교수/방문연구원)는 해외 소재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 ③ 해외학자(방문교수/방문연구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방문교수/방문연구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방문교수/방문연구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 제3장 교육연구팀 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교육연구팀은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팀 참여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팀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육연구팀 운영규정의 제/개정
2. 연구원 임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세출·입, 예산(안) 및 지출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 연구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교육 훈련, 국제 협력, 심포지엄, 공동 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 등 모든 사항을 평가하고 차기 년도의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7. 논문 출판, 특허 등록 및 대학원생 취업 실적을 평가하고, 교수 별 성과급 차등화 제도에 관한 사항

**제15조(성과급 지급기준)** ①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 저명 학술지(SCI, SCIE) 논문 발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산업체와 연계된 실용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의 연구비 유치를 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성과급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참여 교수 1인당 성과급 한도를 연 480만원 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급은 연간 연구 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대학원생 배출 실적 및 기타 교육연구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연구 장학금)** ① 지원 대학원생은 각호의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1. 지원 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대학원생 중에 교육연구팀으로부터 연구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원생으로 정의한다.

2. 전체 참여 대학원생의 70% 내외로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고 참여 지도 교수가 선발한다. 단, 지도 교수는 지원 대학원생 선발 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대학원생을 우선 선발할 의무가 있다.

3. 참여 대학원생 중 박사수료생은 종합시험을 통과해야만 연구 장학금 선발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4. 연구 장학금 지원은 국내 대학원생을 우선으로 하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과제에 참여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장학금은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제17조(국제 학술대회 및 해외연수 참가 대상 선발기준)**① 참여 대학원생 또는 신진 연구인력에게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활동을 장려하고 단기 해외 연수(15일 이내) 등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항공료, 학회 참가 및 등록비, 체재비 등 제반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화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국외 여비는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단기 해외 연수의 경우는 해외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 가능하다.

② 개인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참여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참여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인력의 경우 국제학술대회 구두발표자 또는 지정 토론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은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 논문 20건 이상, 구두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는 참석 후 7일 이내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항공료 영수증,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연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 해외 연수)** ① 국외에서 개최되는 장기 연수(15일 초과)에 파견하는 경우 항공료, 교육 훈련비(수업료, 숙박비, 식비, 교재비 등), 해외 인턴십 활동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1인 최대 200만원) 내에서 국제화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진 연구인력 해외 연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 대학원생의 경우 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 기간 동안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9조(교육연구팀 지출항목)** ① 사업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

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3. 교육과정 개발비
4.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5. 국제화경비
6. 교육연구팀 운영비
7. 간접비

- ② 교육연구팀의 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준용하여 정한다.
- ③ 교육연구팀의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 ④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행정전담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지급형태와 방법은 본 운영규정 제2장 제10조의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인건비)** 사업비는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될 수 있다. 지급방법은 본 운영규정 제2장 제11조, 제12조의 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과정 개발비)**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23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학회 참가 시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와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제한되며,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24조(국제화 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교육연구팀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과학기술 분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 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 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한다.

③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 1, 2 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제 3 장 제 17 조의 내용에 따른다.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규정(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 일 초과외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25조(운영비)** ① 사업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연구팀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1. 교육연구팀 운영비는 행정전담인력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2.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3. 교육연구팀 운영비는 교육연구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교육연구팀 구성원 국내외 여비)** ① 사업추진에 필요한 포럼 참석 및 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국내외 여비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행정전담인력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로 집행한다.

1. 국내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한다.
2. 국외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행정전담인력의 대응직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제 2 호 나 목에 따른다.

**제27조(간접비)** 대학은 각 교육연구팀별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팀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비 예금이자)**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 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연구팀 운영비 내 성과급 및 간접비로의 산입은 불가능하며,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마지막 차년도 사업비 잔액에 의한 발생이자 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 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한하여 이월 가능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업비 집행 관리)** ①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는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준용한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 사용 후 30 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팀의 장에게 전담카드사를 지정하여 연구비 카드를 발급·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 청구 시 교육연구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 매수 및 유형을 정하여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전담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 제5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교육연구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외학자 현황(성명, 성별, 소속학교 및 학과, 연구자번호, 참여기간 등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적사항 포함)
2.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
5. 교육연구팀별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내역 등 사업비 집행 현황
6. 사업비집행계획서, 교육연구팀 자체평가보고서, 연차·중간·최종 보고서 등
7.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장관은 규정 제32조에 따라 입력된 정보는 외부기관 제출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장 행정사항 및 부칙

**제34조(보고사항)** 교육연구팀의 장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 참여교수 등의 명단 및 관련 정보
2. 교육연구팀명 변경
3.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교육연구팀의 실적 및 성과 등

**제35조(승인사항)** 교육연구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1. 교육연구팀의 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제36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 및 교육연구팀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홈페이지 운영)**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연구팀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 참여연구원 평가표

### 1. 연구과제 기본 정보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속	
지원기관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참여연구원명		평가점수		기여도 환산점수	%

### 2. 참여연구원 평가 기준

항 목		내 용	배 점	평가 점수
업무 수행 능력	연구활동지식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10	
	연구역량개발	연구과제 수행 중 맡은 분야를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가	10	
	연구정보수집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있는가	10	
	연구업무추진력	연구과제의 수행 중 문제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가	10	
	응용 및 창의력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응용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10	
업무 수행 자세	연구참여 태도	연구과제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임하였는가	10	
	의사소통능력	연구과제 수행시 자신의 의사를 말과 문서로서 명확하게 전달하는가	10	
	과제수행협조	연구과제 수행중 참여연구원 간 협업에 기여하였는가	10	
기타	연구 성취도	연구과제에서 맡은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달성하였는가	10	
	기타평가 항목	연구책임자의 자율적 평가	10	
<b>합 계</b>				

1) 기여도 산술식:  $\{ (\text{평가점수}) \div (\text{참여연구원 평가점수 총합계}) \} \times 100$

2) 평가표 기준으로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별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단, 전체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합이 100%가 되어야 함)

3) 지원기관의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 적용

년 월 일                      평가자 : 김 장 균 (인)

